

일 · 육아양립 제도



01 사업주를 위한 일 · 육아 양립 지원제도

재택근무, 원격근무, 시차출퇴근, 선택근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, 유산 사산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,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

지원내용

유연근무
장려금
공모형

유형	1개월 지급액		최대지급액
재택원격근무	15만원(월 6일~11일)	30만원(월 12일 이상)	360만원(1년간)
시차출퇴근	10만원(월 6일~11일)	20만원(월 12일 이상)	240만원(1년간)
선택근무	30만원 (월 6시간 이상 단축,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)		360만원(1년간)

*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

신청방법

- 온라인 신청 : 고용24 홈페이지 (www.work24.go.kr)
- 오프라인 신청 : 우편방문(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, 에이원타워 2층 기업지원팀 (031-231-7851~3, 7806))
- 고객상담센터 : (국번없이) 1350

출산육아기
고용안정
장려금
요건형

지원내용

- 1 육아휴직지원금 (월30만원,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) ※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첫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시 월 200만원 특례적용
-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(월 30만원,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) ※처음 허용한 사업장의 경우 세 번째 (1호~3호)까지 월 10만원 추가지원으로 월 40만원
- 3 대체인력지원금 (월 80만원,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) ※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
- 4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한 동료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급한 인센티브 한도 내 월 20만원 지원 ('24.下 신설 시행 예정)

02 일하는 엄마 · 아버지를 위한 육아휴직 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급여의 일부를 지원

지원내용

육아휴직
급여

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원)지원
6+6 부모육아휴직제
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*을 기준으로 지급
*(첫번째달)200만원, (두번째달)250만원, (세번째달)300만원, (네번째달)350만원, (다섯번째달)400만원, (여섯번째달)450만원

육아기
근로시간
단축급여

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며 단축분 급여 지급
- 주5시간 단축분 : 통상임금의 100%(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)
- 나머지 단축분 : 통상임금의 80%(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원)

신청 기간 및 방법

-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,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 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
 - 오프라인 신청 : 우편방문 (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, 에이원타워 2층 모성보호팀 031-231-7848, 7887)
 - 고객상담센터 : (국번없이) 1350

